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I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II |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가능 기간 연장
 - 태국 세관은 4월16일 세관공지 No.149/2564를 게시하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수입자의 피해를 완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면세 및 관세감면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 가능 기간을 2022년 3월 30일 까지로 연장하였음 * [붙임1] 태국 관세청 공지 요약
 - 공지일: 2021년 09월 21일
 - 시행일 : 2021년 10월 01일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데이트('21.10.18)
 -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21.10.1 발표한 공지에 따라 고위험군, 위험군, 저위험군 품목 변경 및 신규 추가되었으나 이전 고위험품목 관리대상에 포함된 리스트의 삭제를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 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 (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 위험군(High Risk) 품목 업데이트 >

- 1) 위험군 추가 품목 : 리치(Lychee), 체리, 석류
- 2) 위험군 삭제 품목 : 딸기, 포도, 감귤, 용과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IV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1] 관련 공지 요약

관세청 공지
NO.149 (2021)

제목 : Covid-19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조건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수입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면세 및 관세 감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기한을 2022년 3월 31일 까지 허용한다.

1. Asean-China (Form E)
2. Thai-China (Form E)
3. Thai-China-Singapore (Form E)
4. Asean (Form D)
- 5. Asean-Korea (Form AK)**
6. Asean-Japan (Form AJ)
7. Thailand-Japan (Form JTEPA)
8. Asean-India (Form AI)
9. Thailand-India (Form FTA Thai-India)
10. Asean-Australia-New zealand (Form AANZ)
11. Asean-Hong Kong (Form AHK)
12. Thailand-Chili (Form TC)
13. Thailand-Peru

면세 및 관세감면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이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수입 신청서(Import Entry Form)의 비고란(Remark) 에
“ขอใช้สำเนาภาพถ่ายหนังสือรับรองถิ่นกำเนิดสินค้าไปพ่วงก่อนและจะแสดงต้นฉบับหนังสือรับรองถิ่นกำเนิดสินค้าในภายหลัง (원산지 증명서 원본 추후 제출 예정)”이라는 태국어 문장을 기입해야 한다.
2. 태국 세관에서 수입자는 수입화물 수령 전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제출 신청양식을 제출하고,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같이 첨부해야 한다. 신청 양식은 공지 파일상에 있는 양식 참고.

수입화물 수령 30일 후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원본(Original)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인해 제출이 어려운 경우 30일간 연장 가능하며 만료 날짜 7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수입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제출 하지 않을 경우 관세 면제 조건 위반으로 간주해 추후 관세청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적용기간은 2021년10월1일부터 2022년03월31일까지

파차라 아난따썬
관세청 국장